

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0. 11. 30.>

##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 (위임용)

\*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위임한 사람	성명 (서명 또는 인)	연락처	주민등록번호	
	주소	대상자와의 관계		
	[ ]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※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위임 받은 사람 (신청인)	성명 (서명 또는 인)	연락처	주민등록번호	
	주소 (시·도)	(시·군·구)	※ 시·도, 시·군·구까지만 작성 (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)	
* 아래는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		
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대상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
위임 내용 (신청내용)	등본 교부 [ ]통	열람 [ ]등본 사항	[ ]초본 사항	
		※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·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. [ ]등본 사항 전부 포함 [ ]초본 사항 전부 포함		
		1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[ ]전체 포함 [ ]직접 입력: 최근 <u>  </u> 년 포함	
		2. 세대 구성 사유	[ ]포함	
		3. 세대 구성 일자	[ ]포함	
		4. 발생일 / 신고일	[ ]포함	
		5. 변동사유	[ ]포함(□세대, □세대원)	
		6.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·세대원·외국인등의 이름	[ ]포함	
		7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[ ]포함(□본인, □세대원)	
		8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	[ ]포함	
9. 동거인	[ ]포함			
초본 교부 [ ]통	1.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	[ ]포함		
	2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[ ]전체 포함 [ ]직접 입력: 최근 <u>  </u> 년 포함		
	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	[ ]포함		
	4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[ ]포함		
	5.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	[ ]포함		
	6. 발생일 / 신고일	[ ]포함		
	7. 변동사유	[ ]포함		
	8. 병역 사항	[ ]포함(□기본(입영/전역일자), □전체)		
	9. 국내거소신고번호 / 외국인등록번호	[ ]포함		
	용도 및 목적			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첨부 서류	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(사본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청인이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유의 사항

-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인(위임받은 사람)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
  -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 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
  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
  -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
- 신청인은 「위임 내용(신청 내용)」 칸의 각 항목에서 「포함」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"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"을 "직접 입력"으로 선택하는 경우,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.
- 위임한 사람은 「서명 또는 인」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자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(한글)을 써야 하고, 통상적인 사인(외국어, 특수문자 등)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(사본도 가능)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.